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 3. 9. 김병룡 의원 외 4인
- 회부일 : 2010. 3. 10.
- 상정일 : 2010. 3. 16.(제16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병룡 의원)

가. 제안이유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에너지 관련 시책 기본방향을 정함 (안 제3조)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의 책무, 사업자와 이용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안 제6조)
- 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4조)
- 공공부문·산업부문·건물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15조 ~ 안 제17조)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 확대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겸 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광신)

- 본 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에 의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천시의회 및 집행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0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2월 24일 집행부 담당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 본 제정 조례는 제4장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의 책무, 사업자와 이용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장에서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에너지 자립에 대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책추진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 범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없 음 ”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부. 끝.